

4. 민간자격 자격관리규정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심리검사평가사 자격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법인이 인정하는 「심리검사평가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심리검사평가사」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심리상담, 미술 교육 등의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법인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12조(자격심사 관리위원회)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심사 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심사 관리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소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교육, 재활, 미술심리상담, 상담,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제14조(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소장의 임기에 따른다.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심리검사평가사 자격규정

제4조(심리검사평가사 2급의 자격) 심리검사평가사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 미술, 심리, 상담, 의료, 교육, 가족, 가정, 재활, 심리상담, 간호학과 등 관련 학과 3학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생) 인 자로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교육 및 임상실습, 사례보고서 제출,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비 관련학과 3학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생) 인 자와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는,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 심리상담, 상담, 의료, 교육, 가족, 가정, 재활, 간호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미술 분야에 2년 이상의 심리검사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교육 및 임상실습, 심리검사보고서 및 사례보고서 제출,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5조(심리검사평가사 1급의 자격) 심리검사평가사 1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 미술, 심리, 상담, 의료, 교육, 가족, 가정, 재활, 심리상담, 간호학과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혹은 심리검사평가사 취득 후 경력 1년이 경과한 자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교육 및 임상실습, 사례보고서 제출,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6조(심리검사평가전문가의 자격) 심리검사평가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 미술, 심리, 상담, 의료, 교육, 가족, 가정, 재활, 심리상담, 간호학과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심리검사평가사 1급 취득 후 경력 1년이 경과한 자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교육 및 임상실습, 사례보고서 제출,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사회복지, 미술, 심리, 상담, 의료, 교육, 가족, 가정, 재활, 심리상담, 간호학과 등 관련학과 박사수로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학회에 심리상담관련 논문 1편이상을 게재한 자는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교육 및 임상실습, 사례보고서 제출, 서류전형 합격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7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교육 및 임상실습을 이수하고, 사례보고서를 제출 한 후 응시할 수 있다.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채점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자격시험 종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과목을 부과한다.

1. 심리검사평가사 2급

- 1)필기시험
- 2)서류심사
- 3)면접시험

2. 심리검사평가사 1급

- 1)필기시험
- 2)서류심사
- 3)면접시험

3. 심리검사평가 전문가

- 1)무시험(서류심사)

2)면접시험

제9조(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연수교육과 임상수련과정)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과 임상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1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 심리검사평가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법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심사 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심사 및 시행규칙

제1조(목적)

본 자격시험 및 시행세칙은 심리검사평가사 자격규정 제 10조에 명시한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자격의 정의)

자격규정 제 7조와 8조, 9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관련전공이라 함은 사회복지, 미술, 심리, 상담, 의료, 교육, 가족, 가정, 재활, 심리상담, 간호학이 해당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 혹은 구분이 어려운 부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시험시기)

자격시험의 횟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3월과 10월에 실시하며, 법인 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하다. 시험 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에서 공고한다.

제4조(시험출제위원)

시험출제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서 출제한다.

제5조(필기고사 합격)

필기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불합격자는 차기 시험응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면접고사 합격)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서 합격해야만 한다. 면접시험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면접시험은 본 세칙 9조에 준한다.

제7조(시험응시 서류)

심리검사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본 법인 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3. 이력서 1부
4.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인증기관 발급) 각 1부
5. 사진 (3×4cm, 최근 6개월 이내) 2매

제8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서류)

본 법인 연수와 기관수련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면접시험을 치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응시원서(본 법인 소정양식)1부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1부
3. 이력서 1부
3.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인증기관 발급) 각 1부
4. 사진 (3×4cm, 최근 6개월 이내) 2매
5. 심리검사보고서 1부(1급에 한함), 2부(1급에 한함), 3부(전문가에 한함)
7. 소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재직증명서 1부

제9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매년 3월, 10월 중에 면접 시험과 함께 실시한다.

제10조(부칙)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시행상 구분이 어려운 사항은 자격심사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리검사평가사의 자격유지

제 1조 (자격의 갱신)

심리검사평가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2조 (자격의 유지)

심리검사평가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심리검사평가사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30시간 이상 본 법
인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특강 등에 참여하여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심리검사평가사는 자격유지 기간 중에 심리검사보고서 1편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3) 만일, 위 1), 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
의 수련 내용은 심리검사평가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이 회복된다.